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편집자 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공포일 및 시행일

○ 법률 제11466호

- 공포일 : 2012.6.1.
- 시행일 : 2012.12.2

□ 하도급자 보호장치 강화

○ 부당특약 유형 확대(제38조제2항)

-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하도급자 보호장치 강화
- 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지급 등 부당특약 유형 추가
 - ※ 현행 부당특약 유형은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감액, 선급금 또는 기성금 미지급,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 하도급공사 준공·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제37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함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 추가

○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제34조제4항)

- 선급금도 준공금, 기성금과 같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개정전	개정후
<p>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p>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p>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p>

○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제99조제2호)

개정전	개정후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제13조제1항제3호)

개정전	개정후
허위로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 등록 결격기간 1년 6개월	허위로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 등록 결격기간 2년 6개월

○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제83조)

- 건설업의 의무적 등록말소 기준 추가
- 건설업등록 후 1년이상 미영업 또는 휴업 시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있는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미달사항을 처분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 등록기준 미달한 경우

□ 기타사항

○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제17조제1항제2호)

- 건설업 법인 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

○ 과징금 상향조정(제82조제1항)

- 위반 시 현행 과징금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과태료 대상 추가(제99조제1항)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